

학교시설물 사용규정

(제정 1986. 6.15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교시설물(이하 “시설물”이라 한다)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교에서 관리하는 회의실, 강당, 세미나실, 운동장, 체육관, 전산실습실, 강의실 등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한다. <개정 2012.6.28>

제3조(사무부서) 외부기관에 대여하는 모든 시설물은 총무지원실에서 총괄 관리하고, 학생 행사는 학생지원실로 신청 후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, 그 밖에 각 부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관리부서에 확인 후 사용한다.

[본조신설 2012.6.28]

제4조(관리부서) 시설물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6.28>

1. 대학본관 대·소회의실: 총무지원실
2. 리사이틀홀: 음악학과 <개정 2018.4.2.>
3. JJ아트홀: 문화융합대학 <개정 2015.3.1., 2017.11.20., 2018.4.2.>
4. 슈퍼스타홀: 학생지원실 <개정 2018.4.2.>
5. 제2캠퍼스 대강당: 평생교육지원실
6. 교수연구동 세미나실: 교무지원실
7. 대학교회, 희망홀: 선교지원실
8. 천연잔디구장: 체육부
9. 인조잔디구장 A, B: 평일 학생지원실, 휴일 총무지원실
10. 전산실습실: 정보통신지원실
11. 체육관: 생활체육학과
12. 천잠관 잔디밭: 의과학대학
13. 온누리홀: 학술정보운영실 <개정 2018.4.2.>
14. 하림미션홀: 선교지원실 <신설 2018.4.2.>
15. 세미나실, 강의실: 해당 단과대학 행정지원실
16. 테니스장: 총무지원실 <신설 2017.11.20.>
17. 노천극장: 시설지원실 <신설 2017.11.20.>
18. JJ골프교육장: 평생교육지원실 <신설 2017.11.20.>

제5조(사용허가) ① 본교 시설물은 교내 행사 또는 회의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타 기관 또는 단체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지원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학생행사 및 수업을 위한 사용은 제3조에 정한 관리소관 부서의 통제하에 사용한다.

③ 타기관 또는 단체가 사용하고자 할 때와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총무지원실에서 사용

을 허가한다.

④ 본교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 3일전에 소정의 사용신청서를 작성, 관리 소관부서를 경유 제2조에 정한 소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⑤ 제3항 사용 희망자가 2명(기관) 이상인 경우에는 대학교육과 관계가 깊은 자(기관)를 우선 허가한다.

⑥ 제3항의 경우 소정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.

제6조(사용관리) 행사 전후의 장내준비나 사후정리는 사용자가 담당하여야 한다. 또한, 총무지원실과 시설지원실에 협조를 요하는 사항은 사전 연락하여야 한다.

제7조(준수사항) ① 강당, 회의실,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장내질서를 유지하고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하며, 금연을 원칙으로 한다.
2. 시설물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해야 한다.
3. 실내에는 각종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다.
4. 사용목적 외의 행사 또는 회의는 할 수 없다.
5. 허가된 시간은 엄수하여야 한다.

② 전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배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③ 사용목적이 본교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을 제한하여야 할 경우 허가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변상책임) 본교 시설물 사용 중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